작성 / 문의 : 권수진 노무사
(cpla_jin@hanmail.net/ 02-3474-8820)

■ 노동관계법 주요 개정 사항 ('21년 하반기 ~ '22년도)

(1) 최저임금 인상 (모든 사업장 대상, 시행일 : 2022. 1. 1.)

- '22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,160원(월 환산액 1,914,440원 / 월 209시간 기준)
- 최저임금 산입 범위: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
  - 다만, 상여금의 10%(월 환산액 기준), 식비의 2%(월 환산액 기준)의 금액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 (→ 예: 식비 10만원 지급 시 1,914,440원의 2%인 38,288원은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되고 나머지 61,712원만 인정됨)

(2)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(30인 미만 대상 : 2021. 7. 1. ~ 2022. 12. 31.)

-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최대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함 (~22. 12. 31까지만)
- 다만,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

(3)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(모든 사업장 대상, 시행일 : 2021. 11. 19.)

-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,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「전자문서법」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함

✓ 위반 시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(4)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(모든 사업장 대상, 시행일 : 2021. 11. 19.)

-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·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
  - 육아휴직 총 기간(1년)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,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

✓ 위반 시, 500만원 이하의 벌금

(5) 임신 근로자 출퇴근시각 변경 요구권 (모든 사업장 대상, 시행일 : 2021. 11. 19.)

-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

✓ 위반 시,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(6)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(사업장 규모에 따라 시행일 상이)

-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
-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
- 다만,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음. 또한 아울러,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규칙 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라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, 이러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게 됨

사업장 규모	시행일
50인 이상 사업장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)	2022. 1. 1.~
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(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)	2024. 1. 1.~
5인 미만	적용제외

(7) 고용장려금 신설 / 취약계층 지원 ('22년도 예정, 자세한 사항은 추후 사업별 지침 참고)

- (청년) 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月80만원씩 12개월 지원
- (고령자)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 시 1인당 분기 30만원 지원
- (장애인)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30~80만원 씩 12개월 지원
- (여성) 육아휴직급여 인상 (4~12개월 도중 50% → 80%), 사업장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예정

(8) 4대 보험 요율 변경 (시행일 : 2022. 1. 1. / 고용보험은 2022. 7. 1.)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국민연금	9%	**9% (동결)**	회사 / 근로자 50%씩 부담
건강보험	6.86%	**6.99%**	
장기요양보험	건보료의 11.52 %	**건보료의 12.27%**	
고용보험 (실업급여)	0.8%	**0.9%**	• '22.7.1.부터 적용 (50%씩 부담) • 고용안정/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동일 (사업주 전액 부담)

끝

노무법인 베스트 솔루션 www.best-solution.kr